

불임 1 공고문

강릉시 공고 제2024-1659호

강릉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-17호

2024년 제4회 강릉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

2024년 제4회 강릉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.

2024년 9월 24일

강릉시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임용 분야 및 업무내용

임용분야 (근무부서)	임용예정 계급	임용인원	업무내용
국제교류 (공보관)	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	1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중국어권 도시외의 교류, 협력사업 추진 관련 일반 행정업무국제교류 외자유치 문화관광홍보 등 각종 중국어 자료 번역 감수외빈초청방문 시 중국어 통역 및 국내외교류분야 제반 업무 등기타 임용권자(부서장)가 지정하는 업무 등
미술관운영 (강릉아트센터)	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	1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시립미술관 운영 및 관리미술작품의 수집, 보존, 연구, 전시, 교육미술관 운영 및 발전계획 수립국내외 미술관 교류 및 연계사업 추진기타 임용권자(부서장)가 지정하는 업무 등
무대조명 (강릉아트센터)	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	1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아트센터 무대조명 업무처리 및 기술지원공연별 조명디자인, 조명작업, 콘솔 운영조명 기자재 조정 및 장면 메모리 작업조명 장비 및 소모품 관리기타 임용권자(부서장)가 지정하는 업무 등

2. 임용 인원 및 기간

임용분야 (근무부서)	임용계급	임용인원	근무기간
국제교류 (공보관)	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	1명	1년
미술관운영 (강릉아트센터)	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	1명	1년
무대조명 (강릉아트센터)	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	1명	1년

※ 근무기간은 근무상황 및 수행실적, 예산 등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

3. 근거 법령

- 가. 『지방공무원법』 제25조의5, 제27조
- 나. 『지방공무원 임용령』 제3조의2, 제17조, 제21조의3, 제21조의4
- 다. 『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』 제34조, 제35조
- 라. 『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』 및 『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』

4. 응시자격

- 가. 공통요건(기준일: 면접시험 시행예정일)

- 응시연령: 18세 이상
- 지역·성별: 제한 없음 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)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 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해당되지 않고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

<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>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<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>

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
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을 하는 행위
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<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>

-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,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 또는 영리 사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.

나. 임용자격: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

임용분야(계급)	임 용 자 격 (기준일: 면접시험 시행예정일)
국제교류 (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미술관운영 (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<p>*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: 국·공·사립 등의 미술관 중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1의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전시기획 및 작품수집연구 등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분야</p>
무대조명 (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)	<p>○ 공연법 제14조(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)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2급 (무대조명) 이상을 소지하고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<p>*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당분야 자격증 취득 후, 「공연법」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에서의 임용예정 직무 분야 경력(경력증명서상 기재된 경력만 인정)

※ 실무경력 인정범위

-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담당업무, 근무기간 및 직위(직급)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(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기재,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)
-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(주당 40시간 미근무)으로 근무한 경우, 반드시 「주당 근무시간」 명시
-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(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0년)이 경과 되지 않아야 함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7조제5항)

5. 시험방법

가. 1차 시험: 서류전형(형식요건 자격심사)

- 1)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

- 2)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며,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함
- ※ 단,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실적, 경력 및 업무실적, 직무관련 자격증,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최종시험 응시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나. 2차 시험: 면접시험(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)

- 1)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, 전문지식, 응용능력, 발전가능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
- 2) 면접시험 평정요소
 -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
 -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
 -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
 - ④ 예의 · 품행 및 성실성
 - ⑤ 창의력 ·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
- 3)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
 - ① 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, 각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(3점), 중(2점), 하(1점)으로 하여 평정하며,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균 점수가 최고 점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
 - ② 단,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“하”로 평정하였거나,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“하”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
 - ③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,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 순위로 추가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
 - ④ 최고득점자의 점수가 동점일 경우 ‘상’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. ‘상’의 개수도 같을 경우 ‘중’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
- 4) 면접시험 점수공개
 - ① 신청방법: (방문) 강릉시청 민원과, (온라인) 정보공개 포털(open.go.kr)
 - ※ 응시자 확인을 위해 신청인 개인정보 ‘공개’ 필수
 - ※ 관련법: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
 - ② 공개항목: 면접위원 심사 결과를 종합한 본인의 총점 또는 평균점수

5. 시험일정

시험공고	원서접수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공고	면접시험		최종합격자 발표
			일시	장소	
2024.9.24(화) ~ 2024.10.7.(월)	2024.9.26.(목) ~ 2024.10.7.(월)	2024.10.11.(금) (예정)	2024.10.18.(금) (예정)	면접시험 공고 시 안내	2024.10.23.(수) (예정)

- ※ 원서접수 상황, 분야별 서류전형 합격자 상황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
- ※ 합격자 발표는 강릉시청 홈페이지 「시험 · 채용공고」 란에 공고

6. 보수수준

(단위: 천 원)

임용분야	임용예정 계급	상 한 액	하 한 액	비고
국제교류	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	50,967	36,358	주 35시간 기준
미술관운영	지방행정조사 일반임기제	81,239	54,132	주 40시간 기준
무대조명	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	50,967	36,358	주 35시간 기준

- ※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사람의 연봉은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임용등급별 하한액을 원칙
- 1) 연봉 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- 2)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 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(단,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7. 응시원서 접수

접수기간

- 2024. 9. 26.(목) ~ 2024. 10. 7.(월) (09:00~18:00, 중식시간 제외)

원서교부

- 강릉시 홈페이지(www.gn.go.kr) 시정소식 >취업정보 >채용정보 게시판에서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다운로드 받아 사용

□ 응시원서 접수처

- 강릉시청 10층 행정지원과(인사) ☎ 033-640-5442

□ 접수방법

- 접수기간 내 본인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

- 인터넷, 택배, 타인 전달 불가
- 등기우편 제출 시 미비서류에 대한 보완 제출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므로 사전에 담당자에게 전화요망
-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접수하며 강릉시 수입증지 대신
① 「우체국의 통상환증서(해당 금액상당)」와
② 응시표 수령을 위한 「반신용 봉투」를 반드시 함께 우송
※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'등기용 우표 부착' 및 수신인 주소·성명 기재

8. 제출서류

① 응시원서 1부 (별지 제1호 서식)

- ▶ 응시수수료: 5급 이상 10,000원 / 6·7급 7,000원 / 8·9급 5,000원(강릉시 수입증지)
 - 강릉시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해당 수수료 납입 후 응시원서에 인증기로 날인(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)
 -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『한부모가족지원법』에 따른 보호대상자, 『장애인연금법』에 따른 수급자,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, 위 해당자는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, 장애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

② 이력서 1부 (별지 제2호 서식)

- ▶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

③ 자기소개서 1부 (별지 제3호 서식)

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(별지 제4호 서식)

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

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

- ▶ 근무기간, 직위, 직급,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확인자의 서명 또는

날인 및 연락처 포함)하고, 해당기관의 관인이 반드시 날인되어야 함

- ▶ 경력증명서로 직무수행 내용 확인이 불가할 경우,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▶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(주당 40시간 미근무)으로 근무한 경우, 반드시 ‘주당 근무시간’ 명시
- ▶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(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0년)이 경과 되지 않아야 함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7조제5항)

⑦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

- ▶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

⑧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 (별지 제5호 서식)

⑨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(별지 제6호 서식)

⑩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(별지 제7호 서식)

⑪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(해당자만 제출)

- ※ 모든 작성서류(응시원서, 자기소개서 등)는 단면으로 인쇄하고, 스테이플러 사용을 금지합니다. * 양면인쇄 금지
- ※ 제출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하며, 유효기간이 없거나 갭신이 불필요한 서류의 경우 발급일과 상관없이 제출 가능함
- ※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반드시 첨부

9. 응시자 유의사항

- 가.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험 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,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등록 하여야 합니다.
- 나.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별도로 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- 다.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병역사항, 신원조회, 결격사유조회,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, 성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

취소될 수 있습니다.(단,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는 반환함)

- 라.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마. 응시서류상 기재착오,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바. 최종합격 된 자의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 사유,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사. 서류전형에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.
- 아.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, (서류 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, 재공고 시 최초응시자는 응시서류를 추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.
- 자.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.

☎ 시험관련 문의: 행정지원과 <인사> 033-640-5442

☎ 직무분야 문의

- 공보관 <대외협력> 033-640-5022
- 강릉아트센터 <전시기획> 033-660-2447
- 강릉아트센터 <무대운영> 033-660-2462